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,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거나 그 지정·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, 운수종사자 중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,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 중 “조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”를 “조합, 연수기관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제4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의료기관과”로 한다.

제49조제5항 중 “마목”을 “바목”으로, “종합병원”을 “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의료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제49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(死傷)사고를 일으킨 자
2. 과거 1년간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
3. 75세 이상인 자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의료기관이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실·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시행

하는 경우 적성검사 기관의 지정·고시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(생략)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·도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, 연합회, 조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	제46조(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조합, 연수기관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제49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의료기관과 ---.
③·④ (생략) 제49조(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) ① ~ ④ (생략)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,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(신체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)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49조(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바목----- --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의료기관----- -----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

<p><신 설></p>	<p>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</p> <p>1. <u>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(死傷)사고를 일으킨 자</u></p>
<p><신 설></p>	<p>2. <u>과거 1년간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</u></p>
<p><신 설></p>	<p>3. <u>75세 이상인 자</u></p>
<p><신 설></p>	<p>⑥ <u>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의료기관이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실·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성검사기관의 지정·고시를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
<p>⑥·⑦ (생략)</p>	<p>⑦·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</p>